



제 429회 국회 (정기회)
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의무화〉

■ 박상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3336호)

2025. 11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이복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의무화(안 제44조의4 제2항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박상혁의원 등 15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9. 26.

다. 회 부 일 : 2025. 9. 2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최근 이 조항에 따라 각 기업이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한 결과, 카카오의 경우 약 27만건을 차단했고,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6개월간 월평균 불법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남. 그러나 이는 각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텔레그램 등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온라인 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(안 제44조의4).

Ⅲ. 검토의견

1.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의무화(안 제44조의4 제2항)

가. 개정안 요지
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 및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(안 제44조의4 제2항)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 (생략)	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<u>시행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</u> <u>하여야 한다.</u>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③ ④ (생략)	③ ④ (현행과 같음)

다. 검토사항

- 현행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정보통신망법”)은 청소년 유해정보와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규제를 수행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.
-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카카오·구글과 함께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도입하여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월 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% 감소하고 수십만 건의 사칭·사기 계정을 적발해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.
- 개정안은 이러한 성공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유해정보와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강화하고자 기업들의 자율규제 시행이 확산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.
- 다만,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규정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제공자단체가 권고 지침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 사업자는 자율규제 시행 여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임.
- 따라서, 개정안과 같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의무화하

더라도 개별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반드시 시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, 개정안의 취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의무화하여 그 시행을 확산시키려는 데 있다면 일정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,

자율규제의 본래 취지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 사업자가 스스로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- 따라서, 자율규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 강제가 아닌 인센티브 부여나 지원정책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설계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.
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하여 자율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·유해정보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.

-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·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,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제1항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가

이드라인 시행만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230